

企業年金會計에 관한 研究**

李 相 奉*

目 次

- I. 序 論
- II. 企業年金會計의 概念的 考察
- III. 年金原價의 測定과 配分
- IV. 資産과 負債의 認識
- V. 年金情報의 公示
- VI. 結 論

I. 序 論

최근 우리나라 社會構造는 經濟成長에 따른 生活水準의 향상으로 先進國에서 볼 수 있는 老齡化 현상이 社會的 問題로 대두되고 있다. 老齡化의 증가는 企業의 立場에서 매년 증가하는 退職給付 때문에 증대한 문제가 발생된다.

종래의 退職金制度는 退職時의 給與額과 勤務年數를 기준으로 하여 退職金을 算定하기 때문에 從業員의 高齡化(算定基準의 上昇) 내지 長期勤續化(支給率의 增加)에 의해 企業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어 退職金累積額이 資本金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退職金累積額 社外積立되지 않고 社內留保에 의해 運營資金으로 활용되는 경우¹⁾가 많기 때문에 企業倒産이나 閉鎖등의 불의의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從業員의 退職給與에 대한 確保가 곤란하게 되어 社會的 問題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많아지게 된다.

*경상대학 조교수

**本 論文은 1988年度 文敎部學術研究助成費에 의하여 研究되었음.

1) 閔宰成, 朴宰用, "退職金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韓國開發研究院, 1984. pp. 62~68.

'82년말 현재 누적퇴직금이 자본금의 100%를 초과하는 기업은 조사대상 기업의 14.4%에 해당되고 社內留保는 80.1%, 社外留保는 19.9%에 이른다고 함.

이러한 退職金制度의 문제해결과 社會保障制度의 일환으로 公的年金인 國民年金制度가 1986년 12월 31일 法律 第3902號로 제정 공포되어 시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國民年金制度는 그 目的과 計算方法上的의 차이로 인하여 退職金制度를 대체시키지 못하고 現行대로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²⁾ 이에 따라 企業의 退職金負擔을 平準化시키고 從業員의 受給權을 保障하고 또한 안정된 雇用 關係維持 등의 재반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退職金의 年金化나 企業年金制度의 導入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³⁾이나 企業年金會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企業年金制度를 導入實施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회계적 문제는 첫째, 매기의 年金 原價를 測定, 配分하는 문제 둘째, 年金制度에서 생기는 資産과 負債의 測定, 報告問題 셋째, 年金制度에 관한 情報의 適正公示問題로 집약된다. 年金制度의 會計問題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에서는 여러 차례의 會計原則이 發表되고 修正되어 왔다. 특히, 財務會計基準審議會(FASB: Financial Standards Board)에서는 1985년 말에 당시까지 年金會計基準이었던 會計原則審議會 意見書 第8號(APB Opinion No. 8) “年金플랜原價의 會計와 FASB 報告書 第36號 “年金情報의 公示: APB Opinion No. 8의 修正”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報告書 第87號⁴⁾ “事業主의 年金會計”를 발표하였다. 이것은 現代年金會計의 특징적인 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따라 본 論文에서는 FASB 報告書 第87號(이하 SFAS No. 87이라고 함)를 중심으로 하여 企業年金制度의 概念的 構造와 年金原價 및 年金負債의 認識, 測定, 報告問題를 分析檢討하여 現代 企業年金會計의 方向을 考察함으로써 향후 企業年金制度의 導入, 實施를 위한 하나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그 目的을 두고 있다.

II. 企業年金會計의 概念的 考察

1. 年金(退職給付)의 本質

退職給付制度는 退職時 또는 그 이후에(年金 또는 日時金의 형식으로)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給付를 지급하는 公式 또는 非公式의인 契約을 말한다. 그 給付額은 일정한 文書條項 또는 사업주의

2) 金世新, “國民年金法 解説”, 중앙경제사, 1987. p. 196.

3) 金榮珍, “年金制度의 導入에 관한 研究”, 경영논집 제22호, 서울대, 1987.

· 申建浩, 退職金制度의 改善方向에 관한 研究”, 産業研究, 제5집, 1983.

· 申守植, “退職金制度와 企業年金”, 上場協, 1980.

· 閔載成, 朴宰用, 前掲書.

· 한국경영자 협회, “기업체질 강화를 위한 퇴직금제도의 개선방향”, 1980 등.

4) FASB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No. 87, “Employers’ Accounting for Pensions”, 1985.

慣行에 의해 퇴직에 앞서 산정 또는 추정가능한 것이다.⁵⁾ 즉 퇴직금부는 퇴직을 원인으로 해서 퇴직급여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일체의 급여를 말한다. 이러한 퇴직급여의 본질에 관해서 크게 功勞報償說, 生活保障說, 賃金後拂說 등의 세가지가 있다.⁶⁾

功勞報償說은 年金給付가 종업원이 기업에 장기간 충실하게 근무해준 대가로 기업주가 배려하는 사항이라는 것이다. 즉, 근로자에게 연금혜택을 주는 것은 고용주의 특권에 속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年金制度에 대하여 財產權을 갖지 못하고 기업도 연금적립이 필요없게 된다. 이 견해는 기업주의 일방적 溫情思想을 원천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生活保障說은 종업원의 퇴직후의 생활보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퇴직금이라는 견해로 노년층의 경제적 의존성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公的 年金 등의 설명에 이용되는 것이다.

賃金後拂說은 退職給付가 급여의 移延支給이라는 설로서 퇴직금은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노동력의 가치 이하로 지불되고 그 미지급분을 퇴직시에 일괄해서 지급되는 것이라는 견해이다.

이 세가지 說 중 오늘날 年金制度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은 賃金後拂說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퇴직금은 勞動協約 등에 의해서 종업원이 제공한 勞動의 代家로서 後拂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⁷⁾

회계에서 移延給與說은 年金會計에 관한 최초 보고서인 ARB No. 36⁸⁾ 이래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견해이다. SFAS No. 87에 따르면, 年金은 고용주와 종업원 사이에 交換이라는 것이다. 즉, 종업원이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현행급여와 기타 급여 이외에 일정의 퇴직소득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年金給付는 사례금이 아니고 급여의 일부분이라는 것이다.⁹⁾ 이와같은 연금급여의 지급은 미래에 지급될 때까지 이연되기 때문에 일종의 移延報酬이며 고용주의 종업원에 대한 義務는 종업원이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회계학적 관점에서 퇴직연금의 성격을 賃金後拂說에서 구하면 미래 퇴직금 지불원인은 지불되는 기간 이전에 이미 노동의 소비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된다. 또한 퇴직연금의 성격을 功勞報償說 내지 生活保障說에서 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퇴직금은 기업측에 있어서 生産性的 維持昂揚, 勞動力의 確保 등을 위한 費用 또는 사회일반에서 기대되고 있는 福利厚生을 위한 費用으로 간주된다.¹⁰⁾

5) IAS No. 26, "Accounting and Reporting by Retirement Benefits", 1987. Par. 7.

6) 申建浩, 前掲書, pp. 111~133.

7) 慎侑根, 「人事管理」, 經文社, 1986. p. 473.

8) Accounting Research Bulletins, No. 36, "Accounting for Annuity Costs Based on Past Service". 1948.

9) FASB Statement No. 87, op. cit., Par. 79.

10) 青木茂男, 「國際會計ハンドブック」 中央經濟社, 1987, p. 501.

2. 企業年金制度의 類型¹¹⁾

企業年金制度의 중요한 특징은 給付公式(benefit formula)과 據出金 規定에 관련된다. 給付가 어떻게 결정되고 基金積立(funding)되는가에 의해 確定據出制(defined contribution plans)와 確定給付型(defined benefit plans)으로 나누어진다.

1) 確定據出制

이 제도는 기업이 연금급부를 위해 매기 적립하여야 하는 거출액을 결정하는 공식을 確定해 놓은 것을 말한다. 이 제도하에서 종업원들이 받게될 연금급부액은 개별 종업원제정에 거출된 금액과 그 거출금의 투자수익으로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確定거출제에서는 基金積立이 강제적으로 이루어 지는데 이것은 자산이 연금급부지급만을 목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¹²⁾

이 제도하에서 기업(사용자)의 의무는 규정된 공식에 의하여 매년 부담금을 연금기금에 불입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年金負債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불입함으로써 의무를 이행하게 되며 確定거출액이 종업원이 근무를 제공한 기간동안에 이루어 지는 경우 한 기간의 純年金原價는 당해 기간동안에 이루어진 거출액이 된다.¹³⁾ 이와같이 確定거출형 연금제도인 경우에는 회계문제가 단순하기 때문에 회계상의 복잡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다.

2) 確定給付型

確定給付制度는 종업원의 연령, 근무기간, 급여와 같은 요소들의 함수로서 퇴직시 제공되어질 年金給付額을 確定하는 것이다.¹⁴⁾ 전형적인 給付公式은 종업원의 퇴직시점에서의 보수수준과 근무년수에 의해 급부액을 결정한다. 예를들어 급부가 최종급여(final pay)에 기초를 둔 경우 年金給付는 최종급여(또는 퇴직전 몇년간의 급여평균)에 근무년수를 곱한 것이다.

이 제도하에서는 퇴직시점에 발생할 연금급부의무에 대처하기 위해 현재 얼마의 금액이 있어야 하는가를 결정해야 하며 確定된 급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基金積立을 해야 한다. 그러나 基金에의 적립은 年金債務가 어떻게 발생하는가에 관련없는 企業의 財務計劃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연금 비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게 되며 年金負債의 測定은 불확실한 미래의 변수(종업원의 생존기간, 미래 근무년수, 퇴직전의 보수, 移職率, 기금의 投資收益率 등)와 관련되기 때문에 年金負債로 보고될 금액의 결정도 논란의 여지를 갖게 된다. 이에 따라 本고에서도 確定給付型 年金制度에 중점을 두고 있다.

11) 年金은 私的·公的 年金에 따라 여러가지로 분류되나 本고에서는 私的年金인 企業年金을 중심으로 한 分類임.

12) H. I. Wolk, JR. Francis, M. G. Tearney, "Accounting Theory: A Conceptual and Institutional Approach," Kent, 1984, p. 476.

13) FASB, Statement No. 87, op. cit., Par. 64.

14) ibid. Par. 11

3. 保險數理的 假定과 基金方式

가. 保險數理的 假定

보험수리적 평가의 목적은 미래에 지출되는 給付의 保險數理의 原價를 推定하는 것이며 年金制度 또는 信託管理費의 지출원가를 추정하는 것이다. 年金原價의 推定은 미래에 지급될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이 퇴직후 종업원의 수명, 사망, 이직, 연금규정의 변경 등의 여러 미래사건에 좌우되기 때문에 불확실하며 基金으로 적립되어야 할 금액은 기금에서 획득할 수 있는 利得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年金에 관련된 불확실성은 보험수리인이 보험수리적 가정을 이용하여 개발한 많은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으로 해결되어져 왔다.¹⁵⁾

保險數理의 假定은 화폐의 시간가치(割引率)와 지급확률(종업원의 사망율, 이직율, 조기퇴직율, 동가정)이 포함한다. 동일한 제도인 경우라도 가정을 달리함으로써 期待給付의 現價가 달라지기 때문에 年金給付의 配分과 保險數理의 現在價值를 계산하는데 보험수리적 가정은 중요한 要素로 이용된다.

確定給付型 年金制度에 있어 약속된 퇴직금부의 지급은 그 제도의 財政狀態, 거출자의 거출능력, 그리고 투자성과에 달려있기 때문에 제도의 財政狀態를 평가하고 假定 및 미래의 據出水準을 고려하기 위해 보험수리전문가의 定期的 助言이 필요하게 된다.¹⁶⁾

會計目的上 保險수리적 가정과 후술하는 基金方式은 첫째, 종업원 퇴직시 충분한 기금보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둘째 年金原價와 관련 負債를 측정하고 보고하기 위해서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年金會計는 推定, 豫測, 判斷을 필연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보험수리전문가들의 判斷과 經驗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¹⁷⁾

나. 保險數理의 基金方式

보험수리인은 미래의 給付를 계산한 후 기업이 年金給付를 지급할 수 있도록 年金制度에 매년 거출해야 하는 基金額을 결정해야 한다. 거출액의 결정은 기업의 流動性, 租稅惠澤 등의 여러가

15) Eldon S. Hendriksen, *Accounting Theory*, 4th. ed. Richard D Irwin. 1982. p.445.

16) IAS No. 19. "Accounting for Retirements Benefits in the Financial Statements of Employers", 1983. Pars 23~26.

17)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의 회계적 이용에 대한 불합리성을 지적하는 논문으로는 John F. Dewhirst, "A Conceptual Approach to Pension Accounting", *Accounting Review*, 1971; Joe J. Cramer, Jr and Charles A. Neyhart, Jr, "A conceptual Framework for Accounting and Reporting by Pension Plans", *ABACUS*. Vol. 16, 1980.

지 문제를 고려해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보험수리적 기금방식은 크게 原價接近法(Cost approach)과 給付接近法(Benefit approach)로 나누어진다.¹⁸⁾

1. 原價接近法

原價接近法은 퇴직시에 지급해야 할 推定總給付額을 예상하고 가정된 利率로 퇴직시에 그 급부액을 충분히 지급될 수 있도록 거출액 수준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하에서 한 기간에 配分된 금액은 당해기간에 획득된 급부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가 아니고 모든 기대급부의 總原價를 年金原價가 매기 일정금액이거나 급부의 일정비율이 되도록 단일 수학적 단계로 할인된 금액이다.

예를 들면, 5년후 종업원에게 지급될 급부가 ₩100,000이고 자산수익율이 10%라고 가정한 경우, 한 가지 기금적립방법은 ₩100,000의 기금을 누적시키기 위해 10% 이자율로 매년말에 거출해야 하는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다. 즉, 적립되어야 급부(총원가)를 정상연금의 현재계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따라서 매기 적립액은 $₩100,000/6.10510 = ₩16,379.75$ 이므로 매개의 勤務原價는 동일한 금액으로 추정된다. 제1차년도 근무원가는 ₩16,379.75이 되고 年金負債도 동일한 금액이 된다. 제2차년도 근무원가는 전년도 연금부채에 대한 10% 이자비용 ₩1,638과 당해년도 근무원가 ₩16,379.75이 가산된 ₩18,017.75이 되고 연금부채는 $₩16,379.75 + ₩1,638 + ₩16,379.75$ 이 된다.

따라서 原價接近法은 퇴직시점의 퇴직급부를 마련하는데 매기 얼마의 금액을 적립하여야 하는가. 즉, 매기의 얼마의 일정금액을 적립하면 퇴직금 지급에 충분한 자금이 마련되었는가에 중점을 두는 방법이다.

2. 給付接近法

급부접근법은 한 기간 동안의 근무에 귀속된 年金給付額을 결정하고 그 給付의 保險數理的 現在價値로서 당해기간의 고용주의 의무(obligation)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즉 특정일에 종업원의 근로에 귀속되는 연금급부액(미래의 현금흐름)을 연금규정에 의해 결정한 다음 그 급부액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를 계산하는 것이다.

給付接近法을 例示하기 위해 가정되는 예는 다음과 같다.¹⁹⁾

1. 종업원들은 3년 동안 근무하고 퇴직한다.
2. 종업원들의 보수는 '86년에 ₩30,000 '87년에 ₩33,000 '88년에 ₩36,300
3. 확정급부공식에 의한 연금급부는 매근무연수에 대해 최종급액의 1%이고 퇴직시에 일괄 지급한다.
4. 이자율(할인율)은 연 12%

이러한 정보로부터 퇴직시 필요한 급부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금액은 ₩1,089이며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18) Kieso and Weygandt, *Intermediate Accounting*, 5th ed. Wiley, 1986. p.911.

19) *ibid.* pp.916~920.

퇴직시 보수	₩36,300
금부공식비율	1% ----- 363
근무년수	× 3
퇴직시 필요한 금부	₩1,089

퇴직금부 ₩1,089은 매년의 년금부채로 配分되어야 하는 데 그 방법은 累積給付方式(Accumulated Benefit Approach)와 豫想給付方式(Projected Benefit Approach)으로 나누어 진다.

1) 累積給付方式

累積給付方式은 현재 및 과거의 급여 수준과 현재까지의 勤務年數를 이용하여 年金給付公式에 의거하여 특정일 이전에 제공된 종업원 근무에 귀속된 금부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 방식하에서 계산된 債務를 累積給付債務(accumulated benefit obligation)라고 한다.²⁰⁾

앞의 예에서 1986년도 금부액은 年金給付公式에 의해 현재보수(₩30,000)과 근무년수(1년)이므로 ₩300(₩30,000×0.01×1년)이다. 이 금부액은 2년후에 지급되므로 ₩300의 현가 ₩239.16(=₩300×0.79179)이 되며 利息費用은 0이다. 이것은 年金負債가 매기에 충분히 적립되지 못하면 年金費用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2차 년도인 1987년의 연금부채는 금부공식에 의하여 ₩660(=₩33,000×0.1×2년)이 되고 1년후에 지급되므로 연금부채의 현가는 ₩589.29(=₩660×0.89286)이 된다. 제2차 년도에 추가된 연금부채는 전년도말의 부채를 차감한 ₩360(=₩660-300)의 현가 ₩321.43이며 나머지 ₩28.70은 이자비용에 해당된다. 즉, 미적립 연금부채(₩239.16)에 대한 이자비용(₩239.16×12%)이 발생하는 것이다. 제3차년도의 연금부채에 대한 계산과정도 제2차년도와 마찬가지로이다.

2) 豫想給付方式

豫想給付方式은 年金給付를 현재까지 제공된 종업원의 근로에 대해서 연금금부공식에 의해 귀속되는 금부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로서 계산한다는 점에서 累積給付方式과 동일하지만 장래 퇴직시의 급여수준에 대한 가정을 이용해서 年金負債를 측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豫想給付方式에서는 보통 豫定총금부를 계산하고 그것을 豫定근무년수로 나누어 매년도의 基準이 되는 급여로 계산하기 때문에 給付/勤務年數方式(benefit/year-of service)라고도 한다. 이 방법에 의해 계산된 채무를 豫想給付債務(Projected Benefit Obligation)²¹⁾라고 하며 이것은 年金이 효과적으로 계속될 것이고 추정된 미래사건(보수증가, 이직, 사망 등)이 발생된다는 가정하에 당해일 까지 근무에 귀속된 給付의 測定值이다.

20) FASB Statement No. 87, op. cit., par. 18.

21) ibid, par. 17.

앞의 예에서 총예정급부 ₩1,089를 예정 근무년수(3년)으로 나눈 ₩363을 매년 급부증가액으로 삼고 그 현가를 계산하는 것이다. 이것은 最終給與水準인 ₩36,300을 급부공식에 따라 계산한 것(₩36,300×0.1×3년)과 같으며 계산과정은 累積給付方式과 동일하다. 만일 年金給付公式이 미래보수수준을 규정한 것이면 미래의 보수수준에 대한 가정을 사용하여 年金負債를 계산하기 때문에 豫想給付債務는 累積給付債務 보다 크게 나타난다.

이상의 그 방법의 계산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累積給付方式		給付/勤務年數方式	
제1차년도 :	급부.....	₩30,000×0.1×1	=₩300	₩1,089/3	=363
	연금부채.....	₩300×0.79179	=239.16	363×0.79179	=289.38
	근무원가.....		=239.16		289.38
	이자비용.....		0		0
제2차년도 :	급부.....	33,000×0.1×2	=660	363×2	=726
	연금부채.....	660×0.89286	=589.29	726×0.89286	=648.22
	제1차년도 연금 부채		239.16		289.38
	연금비용		350.13		358.84
	이자비용	239.16×12%	= 28.70	289.38×12%	= 34.73
	근무원가		321.43		324.11
제3차년도 :	급부	36,300×0.1×3	=1,089	363×3	=1,089
	연금부채	1,089×1	=1,089	1,089×1	=1,089
	제2차년도 연금 부채.....		589.29		648.22
	연금비용		499.71		440.78
	이자비용	589.29×12%	= 70.71	648.22×12%	= 77.78
	근무원가		429		363

	年金費用	年金負債	年金費用	年金負債
제1차년도('86)	₩239.16	₩239.16	₩289.38	₩289.38
제2차년도('87)	350.13	589.29	358.84	648.22
제3차년도('88)	499.71	1089.00	440.78	1,089.00

* 본 예에서 급부의 현재가치라는 용어는 논리단순화를 위해 보험수리적 현가를 대신하여 사용한 것임.

Ⅲ. 年金原價의 測定과 配分

1960년대 중반까지는 대부분의 기업에서 특정기간의 年金費用으로서 종업원 퇴직시 지급한 퇴직금부나 年金基金에 적립한 금액을 인식함으로써 年金制度에서 現金主義를 적용해 왔다. 年金會計에서 現金主義는 지급되거나 基金化되는 금액을 다양화함으로써 損益計算書에 나타나는 年金費用의 조작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특정회계년도에 지급되거나 基金化되는 금액은 年金債務가 어떻게 발생하는가와 관련없는 租稅, 현금의 이용가능성, 이익수준 등의 財務管理的 問題이고 임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특정기간에 퇴직금부를 위한 자금저출액과 이들 금부에 대한 원가의 配分額과는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비용으로 부담될 年金原價는 당해년도의 기금적립액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²²⁾ 다른 원가나 비용의 인식과 마찬가지로 年金會計에서도 發生, 移延, 推定概念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確定給付型 年金制度에 있어서 發生主義는 미래사건이 지급될 금부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미래사건에 대한 推定을 필요로 하며 종업원 근무기간에 걸쳐 年金原價를 配分하는 것은 經濟的 効益(종업원의 근로제공)이 수취된 기간에 年金原價를 인식하므로써 收益費用 對應의 목적에도 부합되는 것이다.²³⁾

年金原價는 단일금액으로 財務諸表에 보고되지만 종업원들이 획득한 給付의 原價와 企業의 財務政策 등의 여러 要素로 구성된다. 따라서 年金原價는 종업원들의 勤務原價(service cost), 利子費用, 年金資産의 實際收益, 過去勤務原價의 償却額, 利得 또는 損失要素가 포함되며 단일의 純額인 純期間年金原價²⁴⁾(net periodic pension cost)로서 결정되어야 한다.

1. 勤務原價

퇴직금부가 종업원이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종업원에게 퇴직금부를 지급하기로 한 사용자의 약속으로 정의되는 경우에 退職年金은 퇴직시 종업원에게 지급될 移延報酬의 한 형태로 고려된다.

22) Accounting Principle Board, Opinion No.8, *Accounting for the Cost of Pension Plans*. 1966. par. 9.

23) FASB Statement No. 87, op. cit, par. 115

24) *ibid*, par. 20.

SFAS No. 87에서는 費用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原價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그것은 어떤 기간에 인식된 원가가 재고자산과 같이 자산의 일부로서 자본화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함.

는 것 처럼 확실한 근거를 갖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給付接近法은 특정기간의 근무에 귀속되는 年金給付額을 산정하고 그 급부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로서 당해기간의 勤務原價要素를 계산하기 때문에 근무원가는 본질적으로 특정기간에 제공된 근무에 귀속되는 給付債務로서 측정되는 것이다. 給付接近法(累積給付方式과 豫想給付方式)중 어느 방법이 年金會計目的에 잘 부합되는 것인지에 대해 논거를 달리한다.

累積給付方式은 종업원이 실제 근무기간과 현재의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年金負債와 年金費用을 측정하기 때문에 주장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³⁰⁾ 첫째, 약속된 퇴직급부의 보험수리에 의한 현재가치는 그 제도의 각 가입자에게 현재 귀속되어야 할 총액이고 사용되는 가정이 보다 적기 때문에 예측급여방식 보다 客觀的이다. 즉, 역사적으로 實現된 사건(realized events)에 의하여 年金費用이 측정되기 때문에 歷史的 原價主義에 의한 회계처리방법이다.³¹⁾ 둘째, 昇給에 의한 급부의 증가는 승급시점에 있어서 그 제도의 채무가 된다. 셋째, 이 방법에 의해 계산된 금액은 일반적으로 제도의 폐지 또는 중지가 있는 경우에 지불되어야 하는 금액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그러나 이 방법은 年金負債의 測定에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가해질 수 있다.

豫想給付方式(給付/勤務年數方式)은 퇴직년도의 급여수준과 당기말까지의 근무기간을 사용하여 매기의 年金費用과 負債를 측정하기 때문에 첫째, 財務報告는 얼마간의 假定이나 推定을 필요로 하며 繼續企業의 가정에 입각해서 작성되어야 한다. 둘째, 最終給與制度에 있어서 給付는 퇴직일 또는 그 가까운 시점에 있어서의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보수, 저축금수준 또는 投資收益率 등이 예측되어야 한다. 셋째, 대부분의 적립이 예측된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 예상급부방식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제도가 과잉적립되지 않았는데도 명백히 과잉적립된 것으로 보고되고 또한, 과소적립되었을 때도 적립이 충분하다고 보고될 것이라는 논거를 갖는다.³²⁾ 이 방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현재의 年金費用에 미래의 보수 수준의 증가를 고려하는 것은 아직 발생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會計行爲이며 만일 연금제도를 현재시점에서 폐지한다고 가정한다면 종업원들에게 지급해야하는 금액은 현재시점에서 기업의 부채를 보다 잘 나타내는 累積給付方式에 의한 금액이라고 주장한다.³³⁾

國際會計基準에서는 報告日까지의 給付에 대한 債務를 명시하기 위해서는 累積給付方式이 이용되어야 하고 일반적인 積立基準인 繼續企業의 잠재적 債務의 크기를 명시하기 위해서는 약속된 퇴직급부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가 公示되어야 한다고 하여 給付方式 두개를 인정하고 있다.

30) IAS No. 26, op. cit., par. 18.

31) K. Schipper and R. L. Well, "Alternative Accounting Treatments for Pension", Accounting Review, 1962. p. 810.

32) IAS No. 26, op. cit., par. 19.

33) Kieso and Weygandt, op. cit., p. 923.

SFAS No. 87에서도 退職給付 들다 상황에 따라 그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年金給付公式이 미래의 보수수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현재의 의무와 期間年金費用을 측정하는 데 미래의 보수수준이 고려해야 한다³⁵⁾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종업원의 최종급여의 1%를 급부로 지급하겠다는 약속으로 인한 현재의 부채는 현재급여의 1%를 지급하겠다는 것과는 다르다는 논리하에 給付/勤務年數方式 만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累積給付債務는 年金情報의 일부(연금제도가 중단되는 경우 기업이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한 정보)로서 公示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후술하는 最少負債(minimum liability)의 인식여부를 결정하는 기초로서 이용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요컨대, 현재 年金會計는 年金原價의 중심요소인 勤務原價를 당해기간에 귀속되는 豫想給付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로서 측정하므로서 豫想給付債務의 증가를 근거로 해서 年金費用을 算定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처리방법은 APB Opinion No. 8까지의 年金會計에 대한 논리화방식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APB까지의 年金會計의 原則은 소위 收益費用接近方式(revenue-expense approach)이었다.³⁶⁾ 즉, 收益에 대응하는 年金費用을 인식하고 측정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負債는 費用의 認識測定의 副産物로서만 인식된다는 논리로서 負債에는 논리적 역점이 없었다.³⁷⁾ 이에 대해 SFAS No. 89에서는 豫想給付債務를 適正한 負債概念에 위치를 두고 그 負債의 증가액(발생액)으로서 年金費用의 認識構造로 삼고 있는 것이다. 즉, 年金會計의 논리화를 資産-負債法³⁸⁾(Asset-Liability approach)에서 구하고 年金負債를 豫想給付債務로 개념적으로 확대시킴으로서 年金費用의 확대계상을 피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같은 논리방식의 전환은 현대회계의 한 특징적인 면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2. 利子費用

퇴직연금은 퇴직시까지 이연되므로 부채가 발생하게 된다. 부채는 할인된 가치로 기록되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자가 발생하게 되고 豫想給付債務는 증가하게 된다. 그 증가액(이자상당액)이 연금원가의 利子費用要素이며 未積立豫想給付債務에 利子率(割引率)을 곱해서 계산된다.

利子費用의 계산에서 利子率의 선택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만일 기업이 예상급부채무를 할 인하는데 높은 이자율을 사용하면 예상급부채무는 적게 계산되고 年金基金은 過大積立(overfunding)한 것이 되며 너무 낮은 이자율을 사용하는 경우 過小積立(underfunding)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利子率에 대한 최선의 推定值를 나타내야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이자율은 ①보험

34) IAS No. 26, op. cit., par. 20.

35) FASB Statement No. 87, op. cit., par. 143.

36) Wolk, Francis and Tearney, op. cit., p. 475.

37) ibid. p. 489.

38) 자세한 내용은 金英曄, 「會計理論」 敝雲出版社, 1989. pp. 285~290 참조할 것.

수리인의 추정에 의한 年金基金의 平均投資收益率, ②長期社債平均利率率 ③資本費用(필수수익율)이다.³⁹⁾ SFAS No. 87에서는 年金給付가 효과적으로 청산될 수 있는 이자율, 즉 부채청산에 이용될 수 있는 이자율로 추정되어야 한다⁴⁰⁾고 하고 내재적인 것 보다는 명시적인 것(explicit approach)이 정보 유용성 관점에서 바람직하다⁴¹⁾고 하고 있다.

3. 年金資産의 實際收益

年金制度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은 基金을 적립함으로써 移延賃金에 대한 부채를 해소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은 年金基金에 적립한 금액(年金資産)과 그 기금으로 부터의 投資收益을 가지고 年金給付를 지급하게 되므로 年金資産에 대한 利得(損失)은 年金原價를 감소시키는 要素가 된다. 年金資産의 실제이득은 期初와 期末에 있어서 기금적립액과 급부지급액을 조정한 年金資産의 公正價値를 기준으로 해서 결정된다.⁴²⁾

年金資産은 일반적으로 年金給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리되고 제한된 株式, 社債, 기타 부동산과 같은 투자자산이며 기업에 의해 적립된 금액과 그 투자수익에서 지급된 급부를 차감한 것이다. 이러한 年金資産은 자산이 債務를 초과하거나 현재 債務를 지급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기업이 임의대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이며 기업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신탁 등으로 분리되고 제한되지 않고는 그 자산이 연금급부에 대비한 것이라고 해도 年金資産으로 간주되지 않는다.⁴³⁾

年金資産의 評價는 公正價値로 이루어진다. 投資資産의 公正價値는 投資를 위한 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市場價値로 평가되며 시장이 이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에 의해 추정될 수 있다. 또한 年金制度의 운영에 사용되는 자산(건물, 설비 등)은 감가누계액을 차감하여 측정된다.⁴⁴⁾ 이러한 공정가치는 기업이 추가적인 기금적립 없이 급부를 지급해야 할 때 연금제도의 능력과 약속된 급부를 지급하는데 필요한 미래 지출액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정보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보고일에 공정가치에 의한 측정이 요구되고 있다.

39) John F. Dewhirst, "A Conceptual Approach to Pension Accounting", *Accounting Review*. 1971. p. 368.

40) FASB Statement No. 87, op. cit., par. 44.

41) *ibid.* par. 191.

42) *ibid.* par. 23.

43) *ibid.* par. 19.

44) *ibid.* pars. 49~51.

4. 過去勤務原價의 償却額

연금제도를 새로 시작하거나 수정하는 경우에 채용 또는 수정일 이전에 제공된 근무에 대해 부여되는 給付를 過去 勤務原價(prior service cost) 또는 遡及的 給付(retroactive benefits)라고 한다. 연금제도가 급부를 증가시키기 위해 시작되거나 수정될 때 소급적 급부는 새로운 給付 公式에 의해 累積給付債務와 豫想給付債務의 증가로 나타나며 그 증가는 실질적인 것이다.⁴⁵⁾ 따라서 수정일(체제일)에 있어서 과거근무원가에 대한 年金負債와 年金原價를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일반적으로 과거근무원가의 회계처리는 다음 2가지 방법이 고려된다.⁴⁶⁾

1) 即時認識法

즉시인식법은 연금제도의 수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거근무원가를 수정년도에 전액 인식하는 방법이다. 즉, 과거근무원가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과거 각 기간에 있어 근로를 제공한 결과 종업원이 획득한 것이기 때문에 이 원가는 결정된 때 바로 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2) 償却法

상각법은 과거근무원가를 차기이후의 기간에 배분하는 방법이다. 즉, 과거근무원가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미래에 종업원이 제공할 근로의 대가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 원가는 근로가 제공되는 현재 및 장래의 기간에 걸쳐 배분되어야 하고 그 배분액(상각액)만이 수정년도의 年金原價에 속한다는 것이다.

위 두가지 방법 중 상각법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방법이다. SFAS No. 87에 의하면 고용주들은 영업활동에 있어 미래에 效益⁴⁷⁾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으면 과거근무에 대해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결과 소급적급부는 수정년도에 전액 연금비용으로 인식해서는 안 되고 그 제도하에서 급부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종업원들의 근무기간 동안에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근무원가를 수정시에 전액 純期間年金原價에 부담시키는 것은 表現充實한 것이 아니며 현실성으로 부터 인정되지 않는 급격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과거근무원가를 연금제도의 채용 또는 수정시의 각 종업원의 장래 근무 년수에 의해 상각하여야 한다⁴⁸⁾는 것이다.

45) *ibid.* par. 157.

46) IAS, No. 19, *op. cit.*, pars. 21, 22.

47) FASB, SStatement No. 87, *op. cit.*, par. 159.

특정한 경우에 예상가능한 미래 경제적 효익은 감소된 종업원 이직, 개선된 생산성, 현행 임금인상 요구의 축소 등

48) *ibid.* pars. 25, 26.

계산의 간편성과 가속상각을 위해 종업원들의 平均殘餘 勤務年數에 걸쳐 직선법 상각도 인정되고 있음.

5. 利得과 損失

제Ⅱ장에서 논의된 것 처럼 연금제도에 있어서 기업의 채무 및 연금원가를 추정하기 위해서 이자율, 퇴직율, 이직율, 급여증가율 등의 보험수리적 가정이 이용된다. 그러나 예기된 미래사건의 정확한 예측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推定値와 實際結果 간에는 차이가 발생하고 그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게 된다. 이때 조정액을 利得과 損失 또는 保險數理的 損益(actuarial gains and losses)이라고 한다. 利得과 損失은 가정의 변경 그리고 가정된 것과 실제와의 차이에서 비롯된 豫想給付債務나 資産의 公正價値의 변동액이며 資産의 실제수익과 기대수익의 차이도 포함되며 특정기간에 결정된 利得과 損失의 효과는 단일 純額으로 취급된다.⁴⁹⁾

利得 또는 損失에 대한 처리는 즉시인식법과 배분법으로 나누어지며 일반적으로 배분법이 이용된다. 즉시인식법은 연금제도의 운영과 직접 관련되지 않거나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관련없는 공장폐쇄 처분 등과 연금제도의 청산, 축소, 특별 퇴직금부, 연금자산의 환수 등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다.⁵⁰⁾ SFAS No.87에 의하면 利得과 損失은 경제적 가치의 실질적 변동 뿐만 아니라 추정에 있어 수정을 반영하는 것이고 한 기간의 이득과 손실은 다른 기간의 손실과 이득에 의해 상쇄되기 때문에 발생한 기간의 純期間 年金原價로서 이득과 손실을 인식해서는 안된다고 하여 그 상각방법으로 Corridor⁵¹⁾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것은 이득과 손실에 의해 야기되는 순간연금원가의 다양한 변동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年初에 미인식된 순이득 또는 손실이 豫想給付債務 또는 年金資産의 시장관련가치⁵²⁾(공정가치)중 보다 큰것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연금제도에 의해 급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업원들의 平均殘餘勤務期間에 걸쳐 상각하는 방법이다.

49) *ibid.* par. 190.

50) FASB Statement No. 88, "Employers' Accounting for settlements and Curtailments of Defined Benefit Pension Plans for Termination Benefits," 1985.

51) FASB, Statement No. 87, *op. cit.*, par. 187.

Kieso and Weygandt, *op. cit.* p. 928.

예상급부채무가 \$100,000이고 시장관련가치가 \$150,000인 경우 이득(손실)은 $(\$15,000 = \$150,000 \times 10\%)$ 를 초과하지 않으면 인식되지 않는다. 이때, \$15,000을 Corridor라고 함.

52) 조작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5년 이내의 공정가치변동을 인식하여 계산된 가치(예, 이동평균법에 의해 계산된 가치).

IV. 資産과 負債의 認識

1. 先給(發生) 年金原價

연금회계 구조상 기업이 연금급부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기의 연금원가 측정액을 年金基金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는 기금적립과 동시에 年金負債를 해소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이 연금부채를 소멸시키기 위해 연금기금을 적립시키는 경우에 그 적립액(年金資産)은 신탁기관의 통제하에 있게되며 기업의 임의대로 영업활동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일상적인 재무자원이 될 수 없으며 대차대조표에는 年金負債와 상쇄되어 자산으로 계상되지 않는다. 그러나 매기 인식된 純期間年金原價와 연금기금에의 거출액이 차이가 생기는 경우에는 資産과 負債가 발생하게 된다. 즉, 매기의 적립액이 연금원가 측정액 보다 적은 경우는 負債(기금적립되지 않은 發生年金原價)로서 그 반대 경우는 資産(先給年金原價)로서 대차대조표에 계상된다.

2. 追加負債와 無形資産

연금제도의 새로운 채택 또는 수정에 의해서 종업원에게 부여한 遞及的 給付는 기업의 年金負債를 증가시키지만 제Ⅲ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년도의 年金原價로서 전액 계상되지 않고 그 상각액 만이 年金原價로 인식되기 때문에 미인식된(미상각된) 과거근무원가는 年金資産이나 負債에 影響을 미치지 않게 된다. 그 결과 給付/勤務年數方式에 의해 계산된 豫定給付債務와 기금거출액의 차이 누계는 대차대조표에 資産 또는 負債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 追加負債의 計上問題가 생기게 된다.

追加負債에 대한 문제는 ARB No. 47 이래 계속되어온 것이나 APB Opinion No. 8에서는 법률적으로 受給權(vested benefits)이 부여된 권리가 연금자산을 초과하는 경우에 負債나 移延負債로서 나타내야 한다⁵³⁾고 하여 계상범위를 법률적 부채로 한정하였다. 이것은 소위 隱匿된 負債(hidden obligation)를 창출하기 때문에 불합리한 것으로 비판을 받아왔다.⁵⁴⁾ 이에 대해 FASB는 年金修正이 미래근무에 귀속될 급부를 증가시키는 정도까지는 계약의 어느 당사자도 이행하지 않은

53) APB Opinion No. 8. op. cit., par. 8.

54) Vincent C. Hennessy, "Accounting for Pension Liabilities by ERISA", Journal of Accounting, Auditing & Finance, Vol. 1 No. 4, 1978.

· Timothy S. Lucas and Besty Ann Hollowell, "Pension accounting: The Liability Question", Journal of Accountancy, 1981.

것(雙方이 未履行契約)이지만 증가된 급부가 이미 제공된 근무에 귀속되는 한 계약의 한 쪽은 이행한 것이며, 또한 계속기업의 가정하에 연금제도는 계속해서 운영되고 급부는 지급될 것이므로 受給權이 부여될 것으로 기대되는 給付는 예상가능한 미래의 회생이고 계속기업의 가정하의 부채는 受給權이 부여된 급부에 한정되지 않는다⁵⁵⁾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累積給付債務가 年金資産의 公正價値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어도 미지출의 累積給付와 동등한 負債(發生年金 原價를 포함)를 追加最少負債(additional minimum liability)로 대차대조표에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追加負債로서 대차대조표에 계상되는 금액은 年金資産의 公正價値를 초과하는 累積給付債務에 發生 또는 先給年金原價를 加減한 것이다. 즉, 追加負債=미지출 누적급부채무+선급연금원가-발생연금원가로 계산함으로써 부채로서 계상되는 최대금액을 추가부채로 한정하고 있다. 이 추가부채에 대응되는 항목은 無形資産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계상된 無形資産은 기간별로 상각되지 않고 연금자산이 누적급부채무를 초과할 때 추가부채와 반대기입으로 제거되는 것이다. 또한, 인식되어야 하는 追加負債가 미인식된 과거 근무원가(과거근무원가의 미상각액)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순기간연금 원가로서 인식되지 않은 순손실을 나타내는 것)은 무형자산으로 처리되지 않고 株主持分에서 차감되는 것으로 보고 되어야 한다.

V. 年金情報의 公示

대차대조표에는 연금원가발생액과 기금지출액과 차이가 생기는 경우 선급연금원가와 발생연금원가가 資産과 負債로 계상되며 손익계산서에는 단일 금액으로서 純期間年金原價 만이 계상된다. 年金會計에 있어 註釋情報은 연금제도의 고유의 복잡성과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기 위한 여러가지 규정 때문에 중요성이 강조된다. 註釋公示로 요구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⁵⁶⁾

첫째, 대상종업원, 급부공식의 유형, 基金政策, 보유자산의 형태, 기간간 비교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건의 성격과 효과를 포함하는 年金制度에 대한 說明.

年金과 給付公式에 대한 설명을 年金原價가 給付公式에 의해 측정되기 때문이며 기금정책과 보유자산형태에 관한 공시는 현금흐름과 연금비용과의 차이뿐만 아니라 현금흐름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고 중요한 사건에 대한 공시는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年金制度의 장기적 추세에 대한 그 영향을 보다 잘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당해기간의 純期間年金原價의 要素

55) FASB Statement No. 87. op. cit, pars. 145, 149.

56) ibid, pars. 213~222.

구성요소에 대한 정보는 年金原價가 어떻게 결정되는 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年金原價의 기간간 변동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세계, 가정된 割引率과 報酬增加率

이들 가정은 순기간연금원가와 예상급부채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상이한 가정을 이용하는 기업들에 대한 의미있는 비교를 하는 경우에 가정에 대한 정보는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네제, 연금회계와 연금기금상태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의 대차대조표에 보고되는 금액과 연금기금에의 적립상태를 조정하는 것으로서 다음 항목이 포함된 명세서

- ① 연금자산의 공정가치
- ② 누적급부채무와 수급권이 부여된 급부를 구별하는 예상급부채무
- ③ 미인식된 과거근무원가
- ④ 미인식 순이득 또는 손실
- ⑤ 인식된 추가부채
- ⑥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발생/선급연금원가(①~⑥의 항목을 결합한 결과액)

VI. 結 論

지금까지 퇴직급부로서 企業年金에 대한 회계문제를 SFAS No. 87 "事業主의 年金會計"를 중심으로 하여 確定給付型 年金制度의 기본적인 틀과 논리를 살펴 보았다.

퇴직급부는 사용자가 종업원들이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종업원에게 퇴직소득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서 그 지급이 장래 퇴직시까지 이연되기 때문에 移延報酬의 성격을 갖는다. 미래에 지급될 것으로 기대되는 年金給付는 여러가지 미래사건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퇴직급부의 지급을 위한 기금을 적립하는 데 保險數理人들이 개발한 保險數理的 評價方法을 이용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현대 연금회계는 보험수리인들의 전문적 판단을 전제로 해서 推定, 豫測判斷을 필연적으로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 하나의 특징으로 지적될 수 있다.

年金原價는 근무원가, 이자비용, 연금자산의 실제수익, 과거근무원가의 상각액, 이득과 손실의 요소로 구성된다. 이 중 중심이 되는 勤務原價要素는 年金給付公式에 의해서 종업원의 근무에 귀속되는 급부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以前의 年金會計原則과는 달리 給付債務를 중심으로 하여 年金原價를 측정하는 것이다. 즉, 給付方式에 의해 측정된 고용주의 豫想給付債務는 FASB 概念報告書 第3號의 負債定義에 부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 부채의 증가액으로 年金原價를 측정함으로써 收益費用法에 의한 비용인식에서 資產-負債法에 의한 비용인식으로 논리적 전환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퇴직금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연금제도에서의 기금적립액은 年金負債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별개의 실체인 年金制度에서 운영되므로 고용주의 資産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이 주목된다.

한편 우리나라 퇴직금제도는 “회사가 기말현재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할 금액은 결산일 현재 전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다”라고 규정함으로써 期末要支給額의 計上方式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企業年金會計의 기본논리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첫째, 전종업원이 일시퇴직이라는 영업활동의 종료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계속기업의 가정에 위배된다.

둘째, 당기 퇴직금지급액이 기말요지급액에 포함되므로 現金主義가 혼재되어 있다.

셋째, 負債計上에 있어 화폐의 시간가치가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過小計上되고 있다.

넷째, 장래의 퇴직금 지급보장을 위해 基金化하는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향후 퇴직금제도나 企業年金에 관련된 회계적 문제로서 재삼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Summary

A Study on Accounting for Pension Plan

Lee Sang-bong

The central accounting questions for pensions regard recognition, measurement and reporting of pension cost and related liability for the sponsoring company. This study is concerned how pension cost should be measured and disclosed, which centers on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FASB Statement No. 87 "Employers' Accounting for Pensions".

The characteristics pension accounting are summarized as following.

1. A pension benefit is a type of deferred compensation offered by the employer in exchange for the service rendered by employee
2. Actuarial assumptions and methods are integral part of accounting for pensions because pension benefits are inherently future events oriented. Therefore pension accounting depends upon estimates, prediction and judgements of actuaries.
3. The periodic pension cost should be recognized as a single sum for a period. The net periodic pension cost consists of five components such as service cost, interest cost, actual return on plan assets, amortization of unrecognized prior service cost, gain and loss.
4. Attribution method of pension benefit to periods of employee service should be based on benefits/year-of-service approach. It is a important change in pension accounting. Traditional approach has been based on revenue-expense approach in which the objective is to accrue yearly pension expense, but FASB determined that retirement benefit should be recognized as an accounting liability. Therefore, pension cost is based on asset-liability approach.
5. Because of inherent complexities of pensions it is required more descriptive information for users of financial reports to assess the status of employer's pension arrangement and its effects on the employer's financial position and results of operations.